

한국군사연구소 규정

제정 2017. 5. 23.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대경대학교 부설 한국군사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연구소는 군사 분야를 연구하여 학교발전 및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연구소는 대경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연구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군사 산업의 다양한 영역 개척과 다채로운 채널 확보
2. 재학생 취·창업과 직결된 미래 사업 발굴
3. 군사 산업분석 및 경영, 기술정보 지원
4. 군사 산·학·연 협력 및 교류활동 지원
5. 군사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6.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5조(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둔다.

② 소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사무직원과 조교) ① 연구소에 사무직원과 조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직원과 조교는 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직원과 조교는 소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소의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예산) 연구소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회계규정을 준용하고 산학협력단 예산에 포함시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예산총계주의) 연구소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은 모두 산학협력단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수입 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회계) 연구소 회계업무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해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회계처리하는 본교의 회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여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17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